# 출자회사관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 비 고 |
|---|---|---|
| **제18조(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)**<br>①공사의 **퇴직임직원**이 퇴직일로부터 1년 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**심사위원회**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br><br>② <생략><br>③ <생략><br>**제18조의2(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 절차)**<br>① <신설><br><br>② <신설><br>③ <신설><br><br>④ <신설> | **제18조(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)**<br>①공사의 **퇴직임직원**이 퇴직일로부터 1년 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**하거나, 퇴직 예정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** **재취업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)**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br>② <현행과 동일><br>③ <현행과 동일><br>**제18조의2(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 절차)**<br>**①출자회사 상임이사를 지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, 사내공모를 거쳐 상임이사심사위원회(이하 "상임심사위원회")를 통해 심사 절차를 거친다.**<br>**②제1항의 공모의 대상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**<br>**③제1항의 상임심사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본부장급 6인으로 구성되며, 심사방식은 서류심사로 한다.**<br>**④상임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는 제18조제1항의 재취업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.**<br><br>**부 칙 <2015.10.30.>**<br>**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** | ○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대상에 기퇴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 임직원도 포함<br><br>○ 심사위원회명을 "재취업 심사위원회"로 명확화<br><br>○ 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시 3단계 절차 규정<br>(사내공개모집 → 후보자 심사 → 재취업 심사) |